

건설관련 법률상담 사례 ⑮

자료제공 / 권진웅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고문변호사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09.1)

Q | 추가 공사비로 정산하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이 비지금 조성을 위한 목적에서 가공의 거래를 한 것일 뿐 추가 공사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A |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1심 판결의 요지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을 대비한 결과 추가공사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당초 설계도면이 나오기 전에 내역서를 토대로 계약을 하였고 그 내역서와 준공도면을 대비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인정되어 정산합의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보충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 공사대금 못 받고 공사에서 배제돼('09.1)

Q |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가 새로운 시공사로 결정되어 저희 업체를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 중지 가처분이 가능한지?

A | 새로운 시공사가 기존의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하고 건설공제조

합으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 주장 ('09.3)

Q | 공사대금 중 1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A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사대금과 관련해 그 채권이 당해 물건(공사현장)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치권의 또 다른 요건은, 그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고 점유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가 중단된 후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인 점유를 해왔다면 유치권이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고 공사 중단으로 인해 현장을 철수했다가 사후 채권 확보를 위해 새로 점유를 시작할 경우 점유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또한 인정되기 곤란하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간 도과 후 하자이행 의무('09.3)

Q 하자이행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당초 시방서와 다른 재료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하자이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A 민법 제 671조는 건물 등의 하자에 대하여 5년 또는 10년의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자이행보증증권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 하자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과는 별개다. 따라서 하자이행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라면 이에 따른 하자이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회사 홈페이지 일부 이미지 저작권 침해('09.4)

Q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일부 이미지에 대하여 다른 회사가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대응방안은?

A 해당 이미지에 대해 관련 회사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비록 홈페이지를 다른 업체에 맡겨 제작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1차적으로 홈페이지 소유 기업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추후에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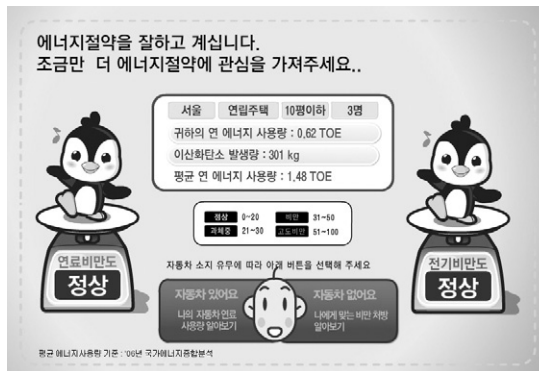
맞춤형 에너지 절약 컨설팅 서비스 지경부, 에너지 다이어트 처방 개시

지식경제부는 가정별 에너지 비만도를 측정해 최적의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비만도 측정 서비스는 거주형태, 인원 등 가구별 특성이 반영된 에너지 적정 사용량을 제시하고 과다사용시(에너지비만) 절감방법(다이어트)을 처방하는 맞춤형 에너지 절약 컨설팅 서비스이다.

누구나 손쉽게 그린 에너지 패밀리 홈페이지(www.gogef.kr)에 접속해 에너지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가구별 생활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가 절약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

지경부는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가구



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소속 전문 진단사가 우수한 다이어트 실적을 달성한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이어트 실적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로 LED 조명,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가정별로 거주형태, 난방연료, 인원 등 조건이 달라 적정 에너지 사용량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며 "에너지 사용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계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무관련 상담사례 ①

자료제공 / 노동부

연봉액에 퇴직금 포함 지급

Q 연봉제 계약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A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무형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계(일급, 월급, 연봉급 등)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간단위로 결정' 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봉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 등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액(연봉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중간정산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 △퇴직금액 및 지급시기 명확히 표시 △중간정산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 발생시 추가지급 등의 중간정산 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수당과 통상임금

Q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A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 내)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Q 연간 지급률로 설정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A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

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간단위로 그 지급률이 설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 시점

Q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청구권 발생시점과 시효계산은?

A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제2

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제4항에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동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며, 그 지급청구권은 그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또는 퇴직)에 발생된다.

임금채권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당해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신 제 품

가스자동차단기 중간밸브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스 자동차단기 중간밸브인 피스존 가스 타이머가 (주)제너럴테크놀러지에서 출시됐다.

피스존 가스타이머는 지렛대 원리와 스프링 리턴 방식(특허출원 : 제00-10220)을 이용한 것으로 가스 사용을 위해 밸브를 돌림과 동시에 시간이 설정되며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가스타임밸브에 의해 자동으로 잠긴다. 또한 설정시간 도달 전에 가스사용이 끝나 중간밸브를 잠글 때 가스타임밸브의 원터치 잠금장치를 당기면 밸브는 자동으



로 잠기게 돼 사용이 편리하다.

따라서 가스를 잠그지 않고 외출하여도 화재에 대한 걱정이 없고, 가스불에 음식물 등을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려도 태울 염려가 없는 등 가스과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집안에 노약자만 있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한다.

문의 : 서울영업소 담당 김영석
HP : 010-6424-4420

판례로 본 건설분쟁 사례①

자료제공 / 『알기쉬운 건설분쟁 사례 해설집』(건설경제 신문사 刊)

▶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성질

쟁점	계약법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판단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 아니다

입찰절차의 기준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는 입찰의 진행과 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를 적용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해서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 심사 기준에 관하여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이 있다.

이와 같이 절차와 기준에 관한 법령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인가?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 입찰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반한 입찰의 효력은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상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다50129 판결)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상의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법적 성격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및 예약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다14812 판결)

판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001다33604 판결)

용어해설

- * 임의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 **입찰자와 낙찰자 결정**

쟁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판단	그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사유가 아님

공공계약의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내지 그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을 비롯하여 입찰의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그 낙찰이 무효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

관급공사의 입찰에는 입찰참가자격이나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의 제한이 있고, 이를 구체화한 입찰자격사전심사요령이나 적격심사기준과 같은 예규가 있다. 발주자가 입찰자격이나 절차 등을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한 상태로 낙찰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낙찰자 결정의 세부심사기준에서 시공능력평가 요소를 그르친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다33604 판결 참조). 또한 입찰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양식과 동일한 ‘입찰서’를 누락한 정도의 하자를 가지고 입찰무효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입찰서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마117 결정).

대법원 판례는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위반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판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다33604 판결)

▶ **예정가를 사전에 알고 낙찰을 받은 계약의 효력**

쟁점	건설회사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고 낙찰받은 계약이 유효한가?
판단	그러한 입찰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계약도 무효이다.

입찰무효의 경우

입찰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채 진행된 입찰과 낙찰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건설회사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고 한 입찰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낙찰과 계약도 무효라고 본다.

판례

“건설회사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그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입찰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 25조 2제9호에 의하여 적용되는 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0조 제8호 소정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이다”
(대법원 97다15852 판결).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1년으로 가정한 지구의 역사

일본의 한 자연과학자는 48억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를 1년이라는 시간으로 축약한 적이 있다. 그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한 달은 4억 년이고, 하루는 1천3백만 년이며, 한시간은 55만 년이다.

이 시간대로 계산해 보면 공룡이 지구에 나타나고 멸종한 것은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이고, 인류의 출현은 12월 31일 저녁 8시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12월 21일 밤 11시 30분이며, 현대문명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기 시작한 것은 12월 31일 자정 2초전이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모음 ⑮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1. 하도급법과 하도급거래

Q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A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는 제조하도급과 건설하도급, 용역하도급으로 구분된다. 제조하도급은 물품의 제조나 판매,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하며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건설하도급은 건설업자가 그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한다.

용역하도급은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상 용역이라 함)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범위는 지식성과물로서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프로그램,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등이 있으며, 역무로서, 엔지니어링활동, 화물운송, 주선활동, 건축물 유지관리, 경비업 활동 등이 있다.

2.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

Q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각종 공사의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아가는 행위는?

A 원사업자가 감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례비조로 매월 일정액을 수급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받았을 경우에는 하도급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3. 일괄/재하도급은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는데 보호가능한지

Q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은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제정 목적이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과 재하

도급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간의 하도급거래이고 하도급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 통보하여 관계법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어음 도래기일 전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을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Q 원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그 도래기일 전에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료 지급여부는?

A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원발주자의 어음 만기일과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60일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금액이 사천만원 이상으로 증액되어 변경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 여부

Q 당초 계약액이 사천만원 미만이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끊지 아니하였는데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변경계약시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A 하도급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추가금액이 4,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2005. 7. 1. 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급보증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2005. 7. 1. 이전에는 3,000만원이었음) ●



한눈에 보는 세계사와 유명인물

복권 발행

로마의 네로 황제는 나라에서 만드는 복권을 처음으로 생각해 냈다. 로마 화재 후 도시를 재건할 건설 자금을 모으기 위해 강제로 복권을 팔았던 것이다. 로마가 멸망하면서 복권은 잠시 사라졌지만 중세 교회와 황실의 재정을 늘리는 수단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는 1539년 처음으로 국가 복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후 엘리자베스 1세 때도 이 제도가 그대로 이어졌다. 이때의 복권도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식기

류와 같은 물품을 상품으로 내걸었는데 훗날 교회와 학교에 자선 복권 판매의 유행을 가져온 계기였다. 얼마 뒤 1등은 주택, 2등은 보석, 3등은 현금을 주는 복권을 팔기도 했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복권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

하도급자 공사현장 반입한 자재 시공사가 무단처분하면 ‘절도죄’

부산지법 판결 ... “건물에 부합되기 전엔 하도급자 소유”

하도급자가 공사현장에 반입시킨 건설자재를 시공사 대표자가 무단으로 처분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유로 기소된 엄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소유권은 건물에 부합되기 전에는 당연히 공급한 자에게 있다”며 “하도급사가 현장에 반입한 공사자재의 소유권은 하도급사가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 하도급사가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유권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하

도급사가 채권 및 자재 반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쇠파이프 등 가시설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독립한 물건이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공급한 하도급사 등이 가진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자재를 반입시켜 둔 하도급사들이 수시로 공사현장에 들러 그 상태를 확인해 왔을 뿐 아니라 시행사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과 건설자재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점 등을 살펴볼 때 시행사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는 세계사와 유명인물

알함브라 성

알함브라 성은 북도와 회랑이 호화롭게 장식된 성으로 북부 아프리카와 스페인 지방을 지배했던 고대 무어 족의 문명을 대표하고 있다. 고대 도시 그라나다 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알함브라 성은 역대 무어 족 왕들의 왕궁이었으며 행정을 관리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1230~1354년 사이에 완성된 이 성은 1492년 그라나다 지역이 스페인에게 점령당하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1812년에는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망루 부분이 부서졌고,

1821년에는 지진으로 상당 부분이 부서졌다. 1828년에 복구 작업을 하면서 옛 모습을 많이 되찾게 되었다.

대리석, 매끄러운 석고에 새겨진 조각, 북도의 벽과 바닥을 수놓은 아름다운 타일, 윗부분을 야자수와 같이 퍼지게 깎은 대리석 기둥, 정원에 세워진 아름다운 분수대를 통해 무어 족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

중재 판정 사례 ⑬

자료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1. 설계도서 납품의 불완전 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B	
피신청인	A	
청구원인	설계도서 납품의 불완전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품목	오피스텔 신축 설계용역	
신청금액	470,000,000원	중재비용 : 5,565,000원
신청일	2003. 7. 21.	
판정일	2003. 9. 29.	
처리기간	71일	
판정금액	0원	

① 사건개요

B는 A와 제 1차로 2001. 7. 2. B 소유의 4필지상에 걸립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3 필지가 추가되어 제 2차로 2001. 9. 17. 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로부터 설계도서를 납품받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었다. 그런데 A가 보다 수익성이 큰 주상복합건물로 설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품된 설계도서도 부실하여 이 도면으로는 도저히 시공하지 못하여 이를 C 업체에 주상복합건물로 다시 설계의뢰를 하여 설계도서를 납품받았는 바, A의 설계도면납품의 불완전이행과 그에 따른 공사시공 및 분양이 10여개월 지연되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 사

건이다.

A는 B의 계약위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설계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A에게 10억원의 손해금 중 우선 금 47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B는 A와 설계용역계약시에 건물의 용도를 A가 지정하여 그에 따라 설계를 하였을 뿐이며 설계도서가 납품되어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가 나왔고 납품된 설계도서로 충분히 시공도 가능하므로, 설계용역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오히려 B가 A에게 제 1차 및 제 2차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가 부실한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는 B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A와 B 간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제 2차 설계계약이 맺어져 이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졌고 건축허가까지 나온 사실을 인정하여 A가 오피스텔로 잘못 설계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B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제 1차 설계용역비에 대하여는 심리를 통하여 A와 B 사이에 제 1차 설계용역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B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A가 B로부터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감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제 1차 설계비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A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최종적으로 B는 A에게 제 2차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미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증액)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증액) 조정	
품목	아파트 건설공사	
신청금액	1,451,693,000 원	중재비용 : 12,774,311원
신청일	2003. 4. 17.	
판정일	2003. 10. 13.	
처리기간	176일	
판정금액	0원	

① 사건개요

A는 2001. 9. 경 B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사금액 15,205,205,000 원에 도급받아 건축 및 설비 부분은 2003. 4. 2.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토목부분은 2003. 5. 2. 에 최종 준공하였다. 그러나 준공시점에서 당 공사의 손익을 가정해 본 결과 총 투입원가가 197억 원원에 육박, 손실규모가 최소 44억원에 이르게 되어 A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시공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되었고 주장한다. 물론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된 원인에는 자재 가격과 노임의 폭등 등 통제 밖 요인도 있고 A의 책임도 있으나, 특이한 설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거푸집 재사용 횟수 산정, 지역의 기상여건 등을 생각하지 못한데서 오는 절대공기의 부족, 지역의 자재수급 가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A의 귀책이 아닌 사유도 주요한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9조에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와 같

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B에게 통지하여 물량변경의 필요성을 심사받은 후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는 시공 전에 B에게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통지조차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의 타당성을 주장하나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증액)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품목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신청금액	40,949,000원	중재비용 : 1,430,658원
신청일	2003. 4. 22.	
판정일	2004. 2. 2.	
처리기간	286일	
판정금액	24,213,314원	

① 사건개요

시공사인 A는 발주자인 B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1,249,386,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2. 26. 에 준공검사를 받아 12. 31. 자로 준공대가를 수령하였다.

A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사유가 발생하여 2002. 11. 26. 자(1차)로 조정기준일 2002. 4. 7. 조정금액 33,662,356원을 신청하였으나, B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하자 2002. 12. 9 자(2차)로 조정기준일 2002. 1. 10. 조정금액 24,213,314원으로 보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B가 다시 보완을 요구

하자, 2002. 12. 23. 자(3차)로 조정기준일을 2002. 1. 2. 과 2002. 8. 14. 로 하고 조정금액을 총 40,949,000 원으로 하여 마지막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준공 전에 A가 제출한 물가변동조정 신청 서류는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였고, 보완서류를 준공처리가 이루어진 후에 제출하는 것은 준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B가 주장하는 것처럼 A가 준공 후에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준공 전에 정당하게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조정기준일과 조정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는 3차에 걸쳐 모두 다르게 산정되어 있어 A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당사자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을 고려하여 A가 스스로 신청한 적이 있던 2차 조정신청시의 조정신청금액만을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재판부는 B로 하여금 A에게 24,213,314원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였다.

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증액)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품목	아파트 공사	
신청금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을 입찰일로 변경계약체결	중재비용 : 36,555,342원
신청일	2003. 5. 7.	
판정일	2003. 9. 24.	
처리기간	140일	
판정금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변경 일부 인정	

① 사건개요

발주자인 B는 시공사인 A(4개 회사 컨소시엄)와 2004. 2. 8. 공사금액을 550억원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B는 2001. 10. 12. 입찰공고를 하였고, A가 입찰하여 2001. 12. 21.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2002. 3. 11. 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아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던 중, 민원처리 관계로 실시설계를 중단하다가 2002. 7. 16. 실시설계 재개를 통보받아 작업을 시행하여 2003. 2. 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도중에 계약체결이 지연되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4조 제 8항에 근거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을 입찰일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B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B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일이 없어 검토 중이라고 하다가 계약체결일에 이르러 A가 부득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특약설정을 전제로 한다는 뜻을 통보하며 항변하였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A가 뜻하지 아니하게 B의 실시설계 중단요청으로 6개월 7일간 작업이 중단되었고, 재정경제부의 의견도 이와 같이 발주기관의 실시설계 중단요구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특약설정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 관계규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특약을 정하지 아니하여 조정기준일을 입찰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시설계 중단기간 만큼은 계약금액에 조정하는 것이 공평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설계 중단기간인 6개월 7일을 역산하여 공제한 2002. 8. 1. 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 하도록 판정하였다.☉